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1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30.

발 의 자 : 김기선 · 정성호 · 이채익
윤종필 · 함진규 · 이명수
김도읍 · 이양수 · 김석기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,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중소·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 특히 미국, EU 등 해외소송 비용은 막대하여 패소한 중소·중견기업은 폐업에 이를 정도로 그 부담이 매우 큼.

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비용,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·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분산·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4 신설).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0조의4(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지원)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,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·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출연·보조의 대상,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0조의4(지식재산권 관련 공제 사업의 지원)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,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·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출연·보조의 대상,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